

제356회 정례회
2017. 6. 9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.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윤은희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3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·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,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수행 기능 삭제 (안 제6조)
- 나.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,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(안 제12조)
- 다. 센터의 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(안 제15조)
- 라. 센터장이 담당하던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함(안 제17조)
- 마. 부칙
 - 적용례 : 제12조제3항, 제15조제5항의 위탁기간 및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6조는,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「영유아보육법」상 시장·군수의 위임사무인, 제7호(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), 제8호(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) 및 시장·군수의 위임사무이자 시·군 보육정책위원회 사무인 제9호(벽지·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)에 대한 심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.

조례(제6조)	관계 법령
제7호	<p>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26조(권한의 위임)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</p>
제8호	<p>1.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</p> <p>2.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</p> <p>3.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</p>
제9호	<p>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40조(도서·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)</p> <p>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</p> <p>2.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</p>

- 안 제8조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‘해촉’을 ‘위촉 해제’로 변경하고,
 - 같은 조 제2호 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’는 적용에 있어 조문규정이 불명확한 바, 이를 ‘직무와

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’ 로 변경함.

※ 비위(非違) : 법에 어긋남

- 안 제12조는, ‘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’ (이하 ‘센터’ 라 함)의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한 것으로,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2016. 8. 3.)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, 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충북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의 위탁기간을 유지해 오고 있음.
 -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위탁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였고, 업무 성격 상 복지시설과 위탁기간에 있어 차별을 둘 별도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, 오히려 3년 단위의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업무 집중의 어려움 등 운영 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점 등으로 판단할 때, 안 제12조의 센터 위탁 기간과 안 제 15조의 센터장 임기를 5년 이내로 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※ 2017년 보육사업 안내 (pp. 426~427)

<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>

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

- 또한, 안 제12조 제5항의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보고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18조에 따라 도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하고 있으며,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 시 센터 운영상황 등을 회의에 부치거나 보고토록 할 수 있는 바, 별도의 보고 의무 조항은 필요성이 미약하고, 다소 과한 규제로 판단됨. 따라서 제5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~ 9. (생략)

10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8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안 제17조는, 기존 센터장이 담당하던 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‘위원 중 호선’으로 변경한 것으로,
 - 센터의 운영계획, 주요업무 추진, 센터장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, 운영 투명성 및 외부 인사의 관심 및 역할 제고 측면에서 호선(互選)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현재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 등 타 지역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음.

- 안 제23조는,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유를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 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한 조건과 통일한 것임.
 - 현행 제1호의 “법령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, 같은 호의 “보조 조건”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현행 제1호는 삭제하고 안 제4호에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부칙은,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, 제12조 제3항의 위탁기간 및 제15조제5항의 센터의 장 임기 규정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탁기관 및 센터의 장부터 적용토록 하였음.

나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법리상 문제가 없으며,
- 절차상으로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, 또한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30호